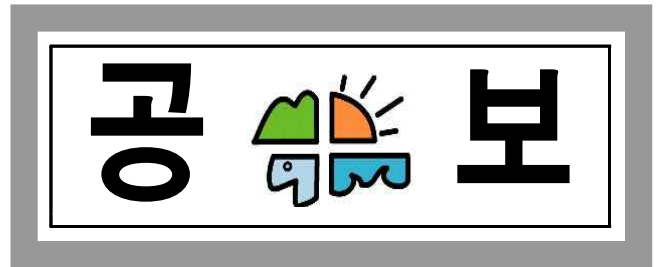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69호 2022년 1월 28일(금)

훈 령

- 속초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 속초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규정 5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2-220호선, 소로3-320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7

공 고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8
-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부담금 공고 10
- 공인 신규등록사항 공고 11

입법예고

-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2
-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21
-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안 예고 27
-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예고 39
-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45

속초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월

속초시장 김 철 수

훈령 제764호

속초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229명”을 “230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부 서 별	계	직 종 별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
계	230	50	157	5	3	15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10		10			
기획예산과						
관 광 과	8		8			
문화체육과	2	2				
세 무 과	2	2				
회 계 과	9	1	5			3
민원토지과	5	5				
일자리경제과	2	2				
지역발전전략과						
복지정책과	6	5	1			
가족지원과	1	1				
교육청소년과	14	12	2			
환 경 과	7		7			
건설도시과	5			5		
안전총괄과	17	1	16			
건축과	3	1	2			
교통과	7		7			
공원녹지과	14		11			3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6	1	5			
보건소	보건정책과	10	10			
	건강증진과	12	12			
	위생의약과	1	1			
상수도사업소	20	2	12			6
하수도사업소	7		6			1
시립박물관	12	1	9			2
환경자원사업소	4		1		3	
도서체육센터	32		32			
영 량 동	2	2				
동 명 동	1	1				
금 호 동	1	1				
교 동	1	1				
노 학 동	2	2				
조 양 동	2	2				
청 호 동	1	1				
대 포 동	1	1				
시 의 회	3	3				

속초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월 26일

속초시장 (직인)

속초시 훈령 제765호

속초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속초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물가안정과 가격 및 수급상황의 정보수집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2회 이상의 물가조사 수행
2. 서민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조사자료 작성·제출
3.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 참여
4.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지도 참여
5. 그 밖에 물가관리를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촉) 모니터요원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실정에 밝아 물가조사활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 지역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2.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소비자단체 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해촉)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속초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3.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활동이 불성실하거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기진작) 간담회, 교육, 연찬회 등을 통하여 모니터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우수 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국내외 산업시찰, 포상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제3조에 따라 임무(교육 참석을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모니터요원의 위촉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속초시 고시 제2022-15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2-220호선, 소로3-320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2-220호선, 소로3-32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2월 4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교통 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기정	소로	2	220	8	국지 도로	1,065	장사307-1도 중1-19	장사산90-1 도시경계	일반 도로	2015.10.16. (속고 제2015-48호)	폭원 확장
변경	소로	2	220	8~10	국지 도로	1,057	장사307-1도 중1-19	장사산90-1 도시경계	일반 도로	2015.10.16. (속고 제2015-48호)	
기정	소로	3	320	6	국지 도로	43	장사307-1도 소2-220	장사229-4답 소3-319	일반 도로	2015.10.16. (속고 제2015-48호)	연장 축소
변경	소로	3	320	6	국지 도로	41	장사307-11도 소2-220	장사229-4답 소3-319	일반 도로	2015.10.16. (속고 제2015-48호)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20	소로2-220	- 선형변경 및 폭원확장 - 연장 : 1,065m → 1,057m(감 8m) - 폭원 : 8m → 8~10m	도로 설계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및 폭원확장
소로3-320	소로3-320	- 연장축소 및 시점변경 - 연장 : 43m → 41m(감 2m) - 시점 : 장사307-1도 → 장사307-11도	- 소로2-220호선 변경에 따른 연장축소 및 시점변경 - 구적오차에 따른 연장정정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 28.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1.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2.1.14.)	강○성	-	건축물 부존재	중앙동 468-75 외 2필지	조적조 주택 116.64㎡

4.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033-63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부담금 공고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속 초 시 장

1. 2022년 속초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적용금액

- 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886,000원/m³
 - 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970,000원/m³
 - 다.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구경별부담금 : 93,000원(D15) ~ 8,286,000원(D100)
- ※ 세부 산출기준 붙임참조

2. 과년도(2021년) 생산자물가상승률 : 6.099%

공 고

「속초시의회 공인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신규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속 초 시 장

1. 공인 등록 사유

— 속초시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공인 신규 등록

2. 공인명 : 속초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구분	공 인 명	인영	규격	사용일 (최초사용일)	비고
신규 등록	속초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인		3.6×3.6cm	2022. 1. 28.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2. 개정사유

가.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사항 반영

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장학금 신청서(별지 서식) 정비

3.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용어 및 관련 조항 정비

- ‘제3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자금의 지급 등’ 을 ‘제3장 저소득 주민장학금의 지급 등’ 으로(안 제3장)
- 장학금 지급대상 중 고등학교 재학생 성적조건 삭제(제23조 2호)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신청서’ 를 저소득주민장학금신청서로 ‘(제24조 1호)
- ‘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 단서 문구 삭제(안 제24조 5호)

나. 용어 현실화 및 불분명한 조항 삭제

- ‘그 밖에 어려운 가정’ 을 ‘저소득주민’ 으로(안22조)
-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로
(안 제22조 제1호)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조항 삭제(안 제22조 제4호)
-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항 삭제
(안 제23조 4호)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 14.(월)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전화(033-639-2180), 팩스(033-639-238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자금의 지급 등”을 “저소득주민장학금의 지급 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어려운 가정””을 ““저소득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람”을 “대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저소득주민장학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성적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제정 자금의 지급 등	제3장 저소득주민장학금의 지급 등
제22조(용어정의) ① 조례 제30조 에 따른 “그 밖에 어려운 가 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가구를 말한다.	제22조(용어정의) ① ----- ---- “저소득주민” ----- ----- -----.
1.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 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 되는 경우	1 . -----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상 인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삭 제>
제23조(장학금 지급대상) 조례 제 30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한하 다.	제23조(장학금 지급대상)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100 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고등 학교 재학생. 단, 신청일 기 준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 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2 학기 성적이 평균 100점 만점	<삭 제>

에 80점 이상인 사람

3. 최근 2년 이내 전국 규모의
예·체능, 과학, 수학, 전산
분야 등 경연대회에서 3위 이
내에 입상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 지
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

제24조(장학생의 추천) ① 장학금
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동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신청
서(별지 제21호서식)

2. ~ 4. (생 략)

5. 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성적
증명서

6. (생 략)

②·③ (생 략)

3

----- 대학생

<삭 제>

제24조(장학생의 추천) ① -----

-----.

1. 저소득주민장학금

2. ~ 4. (현행과 같음)

5. 성적증명서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과 학년
3. 성 명 :
4. 주민등록번호 :
5. 추천이유 (서술식 기재)

위 학생을 속초시 저소득주민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0 0 (추천기관장) (인)

속초시장 귀하

년도 저소득주민 장학생 추천서

0 0 동장

추천 순위	학 생			보호자		생활실태			추천 의견 (요약)
	성명	학교	학년	성명	관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계층	

장 학 증 서

장학금 :금 원
학교 과 학년
성명

위 학생은 년도 속초시 저소득주민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

2.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인 속초해수욕장에 조성중인 관광테마시설(테마파크 및 대관람차)의 관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위해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이용료 규정 및 이용료의 감면과 반환 규정(안 제4~6조)

- 이용료 구분 : 대인 12,000원, 소인 6,000원, 단체 9,000원

- 감면 기준 및 비율은 별표로 별도 규정(총 7가지 항목)

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규정(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불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관광과

- 연 락 처 : 033-639-2365(FAX 033-639-2384)
- 전자메일 : choroyeon@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관광과 관광기획팀(033-639-23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테마시설”이란 민간개발자가 「관광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시행허가를 받아 속초해수욕장에 조성한 테마파크와 대관람차를 말한다.
2. “관람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제1호의 관광테마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대상시설) 이용료 징수대상 관광테마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료) 관광테마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예약자가 이용을 미리 취소한 경우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관광테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광테마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테마파크 및 대관람차	속초시 조양동 1450-143번지 외 1필지	

[별표 2]

관광테마시설 이용료(제4조 관련)

관광테마시설	이용료(원)			비 고
	개 인		단 체	
	대 인	소 인		
대관람차	12,000	6,000	9,000	
테마파크	12,000	6,000	9,000	

〈비 고〉

1. 단 체 :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
2. 소 인 :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별표 3]

이용료 감면기준(제5조 관련)

구 분	감면(%)	비 고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5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 ※ 1.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2-1호

「속초시의회 포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관인생략)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2. 1. 24. ~ 2022. 1. 28.(5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속초시의회 의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의원(☎ 033-639-2502,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2. 1. .

발 의 자 : 방원욱 의원 외 6인

1. 제안이유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안 제3조)
- 나. 표창장, 감사장, 상장 수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안 제8조)
- 다.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 라. 포상 시기는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음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나. 조례안 예고 : 2022. 1. 24 ~ 1. 28(5일간)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
6. 시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시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를 위해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3인(속초시의원)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위원중 다선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의정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거나 기타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시의원,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시민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의회 포상 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급

성명

(표 창 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 ○ ○ (인)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급

성명

(감 사 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

성명 :

(상 장 문 안)

20 년 월 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 ○ ○ (인)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근무기간						(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 천 관 년 월 일 (인)							

주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포 상 대 장

번호	포 상 년월일	포상 종류	포상 기관	피 포 상 자				공적개요	부상	비고
				직위 직명	소속 주소	성별	성명			
			속초시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사장 등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관인생략)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2. 1. 24. ~ 2022. 1. 28.(5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의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의원(☎ 033-639-2781,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2. 1.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6인

1. 제안이유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적용범위 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라.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2) 조례안 예고 : 2022. 1. 24 ~ 1. 28(5일간)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의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의사소통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교양 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져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와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 연수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실태 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계획 수립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제2항 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구분 등) ① 교육연수는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교육과 4대폭력예방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예산의 지원을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에 참여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기관		교육명 (과정)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 필요시 추가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의회 의장 귀하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관인생략)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2. 1. 26. ~ 2022. 2. 3.(9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1636, FAX 033-639-26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500cc@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1.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속초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세대인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다함께돌봄 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4조 ~ 제6조)

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

라.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8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나. 기 타

- 1) 집행부 의견청취
- 2) 조례안 예고
-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는 교육·보호·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 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 체계 구축) 시장은 다함께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 확대 사업
2. 다함께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다함께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4. 다함께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5.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6.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2. 돌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
3. 돌봄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활동
4. 돌봄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5. 적절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돌봄아동과 학부모 상담, 다함께돌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

제6조(다함께돌봄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① 시장은 지역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돌봄 시설 간의 연계·조정 및 상호 협력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 돌봄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복지정책과장, 가족지원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지역 돌봄 시설 관계자
4. 돌봄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
5.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 담당 교사
6. 관내 초등학생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속
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